

수원지방법원 2021. 6. 9 선고 2020가단1912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 론 종 결 2021. 5. 12.

판 결 선 고 2021. 6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2003. 11. 10. 제1481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 청구취지: 주문과 같다. 1) 예비적 청구취지: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2003. 11. 10. 제1481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0. 8. 20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자였던 E가 2003. 11. 10. F에게 '채권최고액 15,000,000원, 채무자 G, H, 근저당권자 F'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쳐준 사실, 원고는 2015. 6. 2.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. 6. 3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6. 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F은 2012. 11. 6. 사망하였고, 피고들이 각 1/2 지분 비율로 망 F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는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2020. 8. 20.자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,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,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우석

목 록

1등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재지하층 호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:

구 조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: 67.16 평방미터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 423 평방미터

---- 이 상 ----

1) 원고는 주위적 청구의 말소등기의 원인을 ‘채무 부존재’로 기재하였으나, 소장 및 당사자 표시 및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기재 청구원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말소등기의 원인을 후발적 실효사유인 ‘변제’로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,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말소등기의

원인을 ‘변제’로 선택한다.